

New "HPP" Tax Bill Signed into Law:

- KUP ^{P1}
- Income Tax ^{P3}
- VAT ^{P5}
-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 ^{P7}
- Carbon Tax ^{P11}
- Excise ^{P13}

신규 "HPP" 법안의 승인 및 확정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2021년 10월 29일자로 Harmonisation 세법 규정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HPP*)안을 법률 2021년 제 7호 (Law No. 7/2021, "HPP Law")로 승인하였습니다.

텍스플래스 19호(2021년)에서 다룬바와 같이, 동 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및 증지세법과 관련하여 많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진공시 프로그램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s/VDP,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및 탄소세와 관련하여 신규 법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신규 HPP법과 관련하여 정부 및 과세당국은 구체적인 시행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HPP법은 일부 규정에 대하여 중요한 정책적 변경사항을 포함하며, 현행 규정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텍스플래쉬는 HPP법의 모든 규정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각 법령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요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KUP)의 개정

국세기본법의 변경사항은 행정벌과금,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및 조세불복절차의 특정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창출법(Job Creation Law)에 따라 납세자의 과실(wrongdoings)에 대한 행정벌과금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납세자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벌과금의 변경사항

No.	조항	미납세액에 대한 벌과금	
		KUP Law ¹	HPP Law
1	미신고, 부적절한 VAT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영세율의 부적절한 사용, 기장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소납부 세액결정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에 대한 행정벌과금		
	a. 해당연도 내에 미납부/과소납부된 소득세액	50% 증가	(MIR*+20%)/12 (최대 24 개월)
	b.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거나 과소징수된 소득세액	100% 증가	(MIR*+20%)/12 (최대 24 개월)
	c. 소득세액이 원천징수 되었으나, 미납 또는 과세납부된 경우		75% 증가
	d. 미납 또는 과소납부된 부가세	100% 증가	75% 증가
2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기각 또는 부분패소한 경우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50%	30%
3	납세자의 세무소송이 기각 또는 부분패소한 경우(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100%	60%

*MIR: 재무부 고시 이자율 (Ministry of Finance (MoF) Interest Rate)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의 변경사항

1. 세무등록번호 (Tax ID Number)

HPP법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번호 (Nomor Induk Kependudukan)가 Tax ID Number (Nomor Pokok Wajib Pajak, NPWP)를 대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도네시아 거주자의 등록번호를 하나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2. 납세자의 대리인 (Taxpayer's proxy)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무상 적절한 자격(tax competency)이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PP법은 대리인이 배우자 또는 가족구성원(혈족 또는 혼인관계로 직계(second degree)까지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¹ KUP Law No.6 Year 1983 as lastly amended by Job Creation Law No.11 Year 2020

3. 자진 공시 (*Pengungkapan Ketidakbenaran*)

동 자진공시(Voluntary Disclosure)는 납세자가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DGT에 자진공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자진공시를 과세결정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SKP*) 발행 이전까지 가능하였으나, HPP법에서는 자진공시를 과세예정통지서(*Surat Pemberitahuan Hasil Pemeriksaan/SPHP*)의 발행 이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로 타상대방(other parties)의 선임

HPP법은 DGT가 “타상대방”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상대방은 해당 거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협력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타상대방에 대한 조사, 징수, 불복절차 및 행정패널티의 부과와 관련한 절차는 정규 납세자와 동일합니다.

타상대방이 전자시스템 운영자(*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의 경우 최고 수준의 패널티는 경고 이후 연결차단(access disconnection)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타상대방의 연결은 패널티 사유를 해소 후 복구될 수 있습니다. 타상대방이 경고를 받고 즉시 패널티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연결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한 개정사항

1. 대법원 심사절차의 신규 조항

HPP법은 대법원 심사절차에 대하여 기존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 또는 DGT가 대법원 심사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동 심사절차는 조세법원(1심)의 결정을 정지하거나 연기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심사절차의 결과로 미납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60%의 패널티가 부과되며, 동 패널티는 DGT가 대법원 심사결과를 받은 시점부터 2년 이내에 과세통지서(*Surat Tagihan Pajak/STP*)를 통하여 징수될 예정입니다.

2. 상호합의 절차(MAP)

HPP법은 MAP절차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AP절차가 조세법원 또는 대법원 심사의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DGT는 다음의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법원 또는 대법원 심사 판결의 항목이 MAP 케이스와 연관되지 않는 경우, DGT는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합니다;

- 조세법원 또는 대법원 심사 판결의 항목이 MAP 케이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 DGT는 MAP 협의 과정에서 동 판결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유로 중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사항

소득세법의 가장 큰 개정사항은 소득세율에 대한 개정이며, 이외에도 복리후생비(Benefit-in-Kind/BIK)에 대한 손금처리 개정사항과 이전가격에 대한 개정 및 기타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세무연도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의 개정

1. 개인소득세율의 개정

HPP법은 개인소득세율과 관련하여 하한 구간을 IDR 50 million에서 IDR 60 million으로 인상하였으며, 상한 구간으로 IDR 5 billion 초과 구간에 대하여 35% 세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과세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구간	세율*
IDR 60 million 이하	5%
IDR 60 million 초과 - IDR 250 million 이하	15%
IDR 250 million 초과 - IDR 500 million 이하	25%
IDR 500 million 초과 - IDR 5 billion 이하	30%
IDR 5 billion 초과	35%

* 동 세율은 정부령(GR)을 통하여 개정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율의 개정 (2022년 부터)

HPP법은 2022년 부터 20%로 인하가 예정되었던 법인세율을 22%로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HPP법은 기존의 Law No.2 Year 2020의 Article 5(1)(b)를 취소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의 개정사항

HPP법의 18조의 해설은 정부가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권한이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세회피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조건에 기반하지 않고, 원칙과 실질이 맞지 않는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타 납세자의 재무성과와 비교하여 너무 낮은 이익을 보고하는 경우.
- 회사가 5년 이상의 상업활동을 수행한 이후, 비합리적인 손실을 보고하는 경우.

회사가 위에서 언급한 하위 2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GT는 비교대상회사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에서도 규정된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는 과세대산 소득 및 비용을 재계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HPP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 사업의 평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동 조항의 해설은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HPP법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정상가격원칙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령(GRs)을 발행하고 규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 납세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금액

HPP법은 개인 납세자에 비과세 대상 매출금액의 한도를 연간 IDR 500 million까지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특정 매출도 신규로 규정하였습니다.

최종분리과세(Final Tax)

현행 소득세법상 일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최종분리과세 적용대상입니다. HPP법은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 및 할인금액을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BIK)에 대한 신규 규정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 특정 BIK는 근로자에게 익금불산입 적용되나 법인세 측면에서 회사의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HPP법은 BIK 일반적으로 익금대상이 되도록 동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아래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a. 전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
- b. 특정 지역내의 BIK;
- c.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BIK;
- d. 지방 또는 주정부의 예산으로부터 제공되는 BIK;
- e. 특정 유형의 BIK (금액 제한이 있음).

반면에, 기존에 손금불산입 대상(근로자에게 익금불산입 사유였던)이었던 특정 BIK는 법인세 측면에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익금불산입 대상이며 법인세 측면에서 손금대상이 되는 BIK는 추후에 정부령을 통하여 규정될 예정입니다.

일부 손금산입 항목에 대한 개정사항

1. 금융서비스 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HPP법은 금융서비스 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충족조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규 법하에서는 은행, 기타대부회사, 옵션권리가 있는 금융리스회사, 소비자 금융회사, 팩토링 회사는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당국(Otoritas Jasa Keuangan/OJK)과 협의 하에 해당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한도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항구적 건물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HPP법은 항구적 건물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20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또는 상각은 20년 기간동안 정액법을 적용하거나 납세자의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실제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자비용 손금산입 한도계산에 대한 방법 추가

현행 법률하에서 이자비용 손금산입 한도는 부채-자본 비율법(Debt-to-Equity Ratio/ DER)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HPP법은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EBITDA (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개정사항

HPP법은 부가세법에 대하여 중대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부가세율의 개정과 일부 부가세 비과세대상 물건의 지위 변경이 있으며, 동 부가세 관련 개정조항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가세율의 개정

HPP법은 부가세율을 다음과 같이 인상하였습니다:

- 2022년 4월 1일 부터 : 11%;
- 2025년 1월 1일 부터 : 12%.

일부 부가세 비과세 대상 물건의 지위 변경

HPP법은 일부 부가세 비과세 대상 물건의 지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부는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부는 부가세 비과세대상이나 특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부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나 전략적 재화/서비스로의 일환으로 면제를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일부 재화/서비스는 전략적 재화/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행 부가세 비과세 대상 재화/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서비스로의 변경

- 천연자원으로 부터 직접 채굴되는 마이닝 도는 드릴링 제품;
- 비 광고 방송 서비스;
- Postal 서비스;
- 공공 전화 서비스;
- 정부의 외환 예치목적으로 보유하는 골드바 외의 골드바;
- Postal 서비스를 통한 현금 송금.

2. 부가세 비과세 대상 재화/서비스로 유지되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항목

- 호텔/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 동 음식과 음료는 지방세 과세대상임;
- 호텔, 주차, 케이터링,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동 서비스는 지방세 과세대상임;
- 다른 사업자이 제공이 불가능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3. 부가세 부가대상 재화/서비스에 해당하나 전략적 재화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

- 공공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
- 보험 서비스;
- 국가 건강 보험 프로그램 하의 의료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금융 서비스;
- 비영리 소셜 서비스;
- 공공 운송 서비스;
- 인력(Labour) 서비스.

전략적 재화/서비스의 목적 범위에 대한 변경

HPP법은 전략적 재화/서비스에서 아래의 카테고리를 제외하였습니다:

-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자가주택;
- 청정수(clean water);
- 전력.

또한, HPP법은 산업 다운스트림 및 비자연재해를 위하여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전략적 재화/서비스 카테고리에 추가하였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변경사항

HPP법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개정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재화/서비스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구매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트레이딩 또는 렌탈 목적이 아닌 세단 및 스테이션 왜곤 형태의 차량의 구입과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비공제 부가세 매입세액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부가세 과세대상 기업(*Pengusaha Kena Pajak/ PKP*)이 과세대상 사업과 비과세 대상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예시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부가세 과세대상 기업이 매출 금액 기준을 하회하거나 특정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 따른 부가세 처리

기존 부가세법에서는 부가세 과세대상 기업이 매출 금액 기준을 하회하거나 특정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계산과 관련하여 반드시 계산양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PP 법에서는 동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HPP 법은 이러한 부가세 과세대상 기업에 대하여 부가세 매출세액을 재무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거래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공시 프로그램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 VDP)

자발적 공시 프로그램(VDP)은 기존의 조세사면제도(Tax Amnesty, TA)의 연장 및 확대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HPP 법은 두 종류의 VDP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VDP I은 2016년 - 2017년에 조세사면제도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의 조세사면제도 적용기간과 동일한 자산취득 기간을 적용합니다. VDP II는 개인 납세자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조세사면제도의 적용기간 종료시점부터 2020년 까지 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VDP I

범위

VDP I 프로그램은 2022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조세사면제도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198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취득한 미신고한 자산(기존 조세사면제도에 신고되지 않은)에 대하여 자진공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세율

신규로 자진공시된 자산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세율 유형	파이널 텍스	재투자 및 송환의무 불이행시	
		SKPKB의 발행을 통하여 조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자산의 신고에 해당하며, 자산이 적격하게 재투자 되는 경우	6%	4.5%	3%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자산의 신고에 해당하며, 자산이 적격하게 재투자 되지 않는 경우	8%		
인도네시아에 소재하지 않은 자산의 신고시: 1. 인도네시아로 송환하는 경우; 및 2. 적격한 투자처에 재투자 되는 경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투자 실패시: 4.5% 두 가지 조건 모두 실패시: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투자 실패시: 3% 두 가지 조건 모두 실패시: 6%
인도네시아에 소재하지 않은 자산의 신고시: 1. 인도네시아로 송환하는 경우; 및 2. 적격한 투자처에 재투자 되지 않는 경우	8%	송환 실패시: 5.5%	송환 실패시: 4%
인도네시아에 소재하지 않는 자산의 신고에 해당하며, 자산이 송환되지 않는 경우	11%		

자산의 송환 및 재투자

자산의 신고는 자산의 형태에 제한이 없으며, 국내 또는 국외 자산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 자산의 경우 적격한 투자처에 재투자 되는 경우, 국외 자산의 경우 송환 후 적격한 투자처에 재투자 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자산의 송환 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적격한 투자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네시아 내에서 천연자원을 프로세싱하는 사업활동(예: 금광성 가공을 통한 순금 생산) 또는 재생에너지(예: 태양광 에너지) 분야;
- 정부채무증권(*Surat Berharga negara/SBN*)

적격한 투자처에 2023년 9월 30일까지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일로부터 최소 5년이상 투자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외자산의 송환 실패 또는 송환자산의 적격한 투자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22년 세무연도에 위에서 언급한 세율로 추가적인 Final Tax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기준가액

자산 공시 서한 (*Surat Pembertahuan Pengungkapan Harta/SPPH*)에 사용되는 순자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현금 및 현금등가물 - 액면가액;
- b. 하기의 자산은 공고된 가액:
 - 토지, 건물 및 자동차 : 세무상 판매가격;
 - 금 및 은 : Antam의 공고가액;
 - 상장 주식 및 워런티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인덱스 가격;
 - 정부채무증권(SBN), 채무증권, 기업Susuk의 경우, PT Penilai Harga Efek Indonesia index 가격;
- c. 상기 (b)에서 언급한 가격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

절차

VDP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SPPH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세금 납부 영수증;
- b. 자산 및 부채의 목록;
- c. 자산이 송환 및 적격한 투자처에 재투자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서.

DGT는 납세자가 제출한 SPPH에 대하여 승인서(*Surat Keterangan/SK*)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DGT가 조사과정에서 신고서와 실질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DGT는 승인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혜택

승인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 납세자는 조세사면제도 법 Article 18(3)에 따른 행정벌과금(즉, 200%)을 부과받지 않음.
- b. SPPH에 공시한 데이터와 정보는 형사상 기소 또는 조세범 조사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음.

VDP II

범위

VDP II 프로그램도 2022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VDP II는 개인납세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자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해당자산은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공시가 되지 않았어야 하며, 2020년말 기준으로 납세자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격성 및 요구조건

모든 개인납세자는 VDP II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납세자는 제외됩니다:

- a. 납세자가 2016년 – 2020년 회계기간에 대하여 조세범죄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사전세무조사를 수감중인 경우;
- b. 납세자가 조세범죄에 대하여 수사, 법원공청회 또는 형사처벌이 진행중인 경우.

또한, VDP II를 신청하는 개인납세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a. NPWP를 보유하고 있을것;
- b. VDP II에 따른 최종분리과세의 소득세를 납부할 것;
- c. 2020년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제출 할 것;
- d. 조세 관련 아래의 법적 조치에 대한 취소 신청할 것:
 - 1) 세금 환급;
 - 2) 세금 수정신고;
 - 3) 행정벌과금에 대한 취소 또는 경감 신청;
 - 4) 부당한 SKP의 취소 또는 경감 신청;
 - 5) 부당한 STP에 대한 취소 또는 경감 신청;
 - 6) 이의신청;
 - 7) 조세소송(Tax Appeal);
 - 8) 소송(Lawsuit);
 - 9) 대법원 재심.

적용세율

신규로 자진공시된 자산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세율 유형	파이널 텍스	재투자 및 송환의무 불이행시	
		SKPKB의 발행을 통하여 조정되는 경우	Voluntarily paid by the taxpayer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자산의 신고에 해당하며, 자산이 적격하게 재투자 되는 경우	12%	4.5%	3%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자산의 신고에 해당하며, 자산이 적격하게 재투자 되지 않는 경우	14%		
인도네시아에 소재하지 않은 자산의 신고시: 1. 인도네시아로 송환하는 경우; 및 2. 적격한 투자처에 재투자 되는 경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투자 실패시: 4.5% 두 가지 조건 모두 실패시: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투자 실패시: 3% 두 가지 조건 모두 실패시: 7%
인도네시아에 소재하지 않은 자산의 신고시: 1. 인도네시아로 송환하는 경우; 및 2. 적격한 투자처에 재투자 되지 않는 경우	14%	송환 실패시: 6.5%	송환 실패시: 5%
인도네시아에 소재하지 않는 자산의 신고에 해당하며, 자산이 송환되지 않는 경우	18%		

자산의 송환 및 재투자

국외자산의 재송환과 적격한 투자처에 대한 투자의 마감기한은 VDP I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각각 2022년 9월 30일과 2023년 9월 30일입니다. 적격한 투자처에 대한 투자시 투자기간은 최소 5년 입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적격한 투자처에 대한 조건은 VDP I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의 송환 실패 또는 송환자산의 적격한 투자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추가적인 Final Tax는 VDP I과 일부 상이합니다(위의 표 참고).

자산의 기준가액

자산 공시 서한 (Surat Pembertahuan Pengungkapan Harta/SPPH)에 사용되는 순자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현금 및 현금등가물 - 액면가액;
- b. 타 자산의 경우 - 취득가액.

절차

VDP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SPPH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세금 납부 영수증;
- b. 자산 및 부채의 목록;
- c. 자산이 송환 및 적격한 투자처에 재투자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서.

DGT는 납세자가 제출한 SPPH에 대하여 승인서(Surat Keterangan/SK)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DGT가 조사과정에서 신고서와 실질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DGT는 승인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혜택

승인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 2016년 부터 2020년 까지의 세무조사에 대한 면제. 그러나, SPPH에 공시된 자산에 대한 신규 데이터와 정보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b. SPPH에 공시한 데이터와 정보는 형사상 기소 또는 조세범 조사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음.

상기 (a)에서 공시하지 않은 미공시 자산에 대하여는 2022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간주되며, 30%의 Final Tax 및 행정벌과금(국세기본법 제13조 2항에 해당하며, SKPKB를 통한 징수)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한사항

2016년 - 2020년의 소득세 신고서가 동 법안의 실행일 이후에 수정신고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납세자가 2020년 소득세 신고서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납세자는 2020년 이전의 최근 소득세 신고서상의 자산에 대하여만 공시할 수 있으며, 추가로 2020년의 소득을 기반으로 취득한 자산까지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서는 동 법안의 실행일 이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b. (a)에서 인정하는 자산이외에는 SPPH를 통하여 VDP II를 적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탄소세 Carbon Tax

탄소세는 HPP 법안에서 신규로 도입한 법조항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세 물건 / Tax object

탄소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탄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탄소배출”은 정부령의 발행으로 개념이 확대/추가 될 수 있습니다(연간 국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승인 이후). 동 사항은 탄소세의 과세 범위가 매년 재검토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탄소세의 부과는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거시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a. 다음을 포함한 탄소세의 “로드맵”:

-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전략;
- 탄소감축이 우선시 되는 산업 및 섹터;
-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과의 공조;
- 기타 다양한 정책과의 공조;

b. 탄소 시장 로드맵.

과세 대상 / Tax subjects

탄소를 포함한 재화를 구입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탄소배출이 특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탄소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HPP법은 탄소세 과세 대상에 대하여 탄소 구입자 또는 탄소배출자로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후속적으로 정부령을 통하여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해설서에는 첫번째 과세대상으로 이미 발전소(탄소 배출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서는 탄소세의 부과는 개인보다는 기업에 우선시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세율 및 과세 시점 / Tax rate and taxable event

탄소세율은 내국 탄소시장의 탄소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kg CO₂e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HPP 법에서는 탄소세율이 IDR 30/kg CO₂e을 하회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세율은 재무부 규정을 통하여 재검토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탄소 시장이 형성된 이후에 탄소세율이 시장가격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IDR 30/kg CO₂e을 최소 세율로 규정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탄소세는 다음의 시점에 부과됩니다:

- a) 탄소를 포함한 재화가 구입되는 시점;
- b) 탄소배출 활동이 수행되는 경우, 해당 연도말 시점 (12월);
- c) 정부령에 규정된 경우, 해당 시점.

실행 계획 / Implementation milestone

탄소세의 부과는 다음의 이정표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행될 예정입니다:

2021	탄소 거래 매커니즘에 대한 개발.
2022 – 2024	석탄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cap and tax” 매커니즘을 통한 탄소세 부과. 동 프로젝트가 정부 또는 해당 부처에서 정한 탄소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탄소세 부과. 해당 기간 중에 “cap and tax” 매커니즘이 “cap and trade” 매커니즘과 혼조되어 적용이 될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 합니다. 해당 기간 중에 석탄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와 PLN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2025 and onwards	탄소거래의 완전 실행과 탄소세의 확대는 보다 일반적으로 관련 부문의 준비, 경제 상환 및 적용 규모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탄소 “상쇄” / Carbon “offset”

탄소배출의 상쇄와 거래에 참여하거나 환경부문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타 매커니즘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탄소세 경감;
- 탄소세 의무 준수를 위한 기타 혜택.

이는 탄소세 의무를 낮추기 위해 트레이딩 또는 상쇄가 허용되는 국제적 접근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에 모든 트레이딩/상쇄 매커니즘은 수요에 기반한 탄소세율의 증가로 인하여 탄소세 의무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당근과 채찍” 매커니즘은 인도네시아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파리 협정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효력발생일 / Effective date

탄소세의 실행은 시장의 준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석탄 화력 발전소 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행규정 / Implementing regulations

로드맵 정책, 과세물건 및 대상, 과세시점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탄소세 수입할당 등에 대한 규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정부령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재무부는 탄소세율, 과세표준, 행정 매커니즘, 탄소세 의무 충족시 탄소세 절감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재무부 규정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증지세(Excise) 개정

HPP법에서는 증지세법과 관련하여 여러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HPP법의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개정사항으로는 HPP법은 전자담배를 담배제품으로 포함하여 증지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증지세 과세대상 품목의 추가 및 삭제와 관련하여 정부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추가적인 정부령을 통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HPP법은 허가증, 증지세 과세대상 재화의 반출, 포장되지 않은 증지세 과세대상 재화, 범죄 행위로 부터 취득한 증지세 과세대상 재화, 증지세 테이프의 판매와 구입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진행중인 분쟁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절차의 단계별로 시행규정이 하기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위반사항이 아직 예비조사(examination) 절차에 있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하였어야 하는 증지세의 3배 금액을 행정벌과금으로 납부하면 동 케이스는 조사(Investigation)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 위반사항이 이미 조사(Investigation) 단계에 있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하였어야 하는 증지세의 4배 금액을 행정벌과금으로 납부하면 검사장(Attorney General)은 조사단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기존 규정에는 납세자는 반드시 미납 증지세와 추가로 4배수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위반과 관련한 증지세 과세대상 재화는 정부에서 몰수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이와 관련 재화도 정부에서 몰수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Email : taehun.jung@pwc.com)

박인혁 회계사
(Email : inhyuk.park@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jadi Lee
sujadi.lee@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vinash Rao
a.rao@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1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